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4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(2023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1,423백만원에서 1,828백만원으로 405백만원 증액하였고, '보조금반환수입' 금액이 당초 8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7백만원 증액하였음.
- 예치금 회수 : '타지자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202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18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81백만원),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분(4백만원)
  - 보조금 반환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(6백만원), '청소년 역사문화교류'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(1백만원)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750백만원에서 1,162백만원으로 412백만원 증가하여 55% 변경되었음.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<b>합 계</b>	<b>2,810,837</b>	<b>3,223,343</b>	<b>412,506</b>	<b>14.7</b>
<b>세외수입</b>	<b>88,274</b>	<b>95,250</b>	<b>6,976</b>	<b>7.9</b>
경상적세외수입	80,041	80,041	-	-
이자수입	80,041	80,041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80,000	80,000	-	-
기타이자수입	41	41	-	-
임시적세외수입	8,233	15,209	6,976	84.7
보조금반환수입	8,233	15,209	6,976	84.7
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2,233	3,222	989	44.3
위탁비반환수입	6,000	11,987	5,987	99.8
<b>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</b>	<b>2,722,563</b>	<b>3,128,093</b>	<b>405,530</b>	<b>14.9</b>
보전수입등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예치금회수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예치금회수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내부거래	1,300,000	1,300,000	-	-
전입금	1,300,000	1,3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300,000	1,300,000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률 (F=E/A)
<b>합 계</b>	<b>2,810,837</b>	<b>3,223,343</b>	<b>412,506</b>	<b>14.7</b>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057,800	2,057,800	-	-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057,800	2,057,800	-	-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00,000	300,000	-	-
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,000	1,000,000	-	-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50,000	250,000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72,800	472,800	-	-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	35,000	35,000	-	-
<b>재무활동</b>	<b>750,037</b>	<b>1,162,543</b>	<b>412,506</b>	<b>55.0</b>
보전지출	750,037	1,162,543	412,506	55.0
여유자금 예치	750,037	1,162,543	412,506	55.0
<b>행정운영경비</b>	<b>3,000</b>	<b>3,000</b>	<b>-</b>	<b>-</b>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대외협력과 지역상생팀 김근형(☎ 2133-6658)